#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0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서영교·김용민·김준형

오세희 · 김승원 · 박홍배

전현희 • 이건태 • 박균택

이재관 • 채현일 • 이훈기

김 윤 · 김남근 · 박지원

김문수 · 정성호 · 김현정

장경태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형사 본안 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

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법률 제 호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3,214명"을 "3,584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	
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u>3,214명</u> 으로 한다.	<u>3,584명</u>